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00. ~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총리령 제17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
“2025년 2월 20일”을 “2027년 2월 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총리령 제17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7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<u>2025년 2월 20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2월 20일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